

「2022년 B.Startup PIE」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기 모집공고

B.Startup PIE(Potential Investment for Early-Stage Startup)는 초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목적)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과 더불어 투자유치 지원 기회 발판을 마련하고,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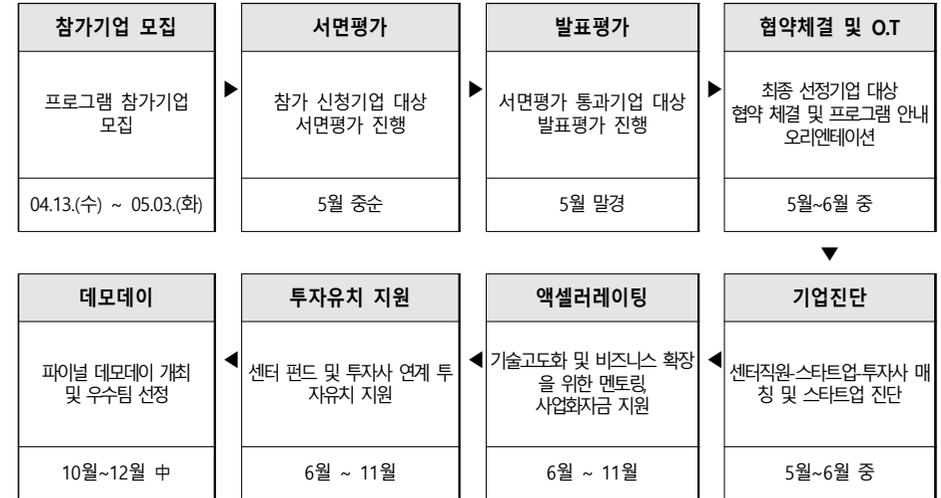
□ 사업내용

- 스타트업-센터직원-투자사 매칭을 시행하여 스타트업 진단, 목표설정, 마일스톤 등의 창업 전반적인 성장 지원 코칭 및 멘토링 지원
- 스타트업 진단 및 목표설정, 마일스톤 등의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기업당 8백만원 내외)
- 스타트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센터 펀드 및 협업투자사 펀드 연계 투자유치 지원
- AC·VC 연계하여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최종 데모데이 개최(우수기업은 2023년 해외시장검증 지원)

□ 사업주체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 (주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파트너) 롯데벤처스, 미래과학기술지주(주), IBK창공, BNK벤처투자 K&투자파트너스, 시리즈벤처스, 스마트파머

□ 추진일정



□ 선정규모

- (지원규모) 총 6개사 내외
 - ※ 전체 모집규모(6개사)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가점) ①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대상(1점)
 ② IBK창공 졸업기업 대상(1점)
 ③ 2021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대상(1점)
- ※ 가점은 총 3점으로 해당 부분 반영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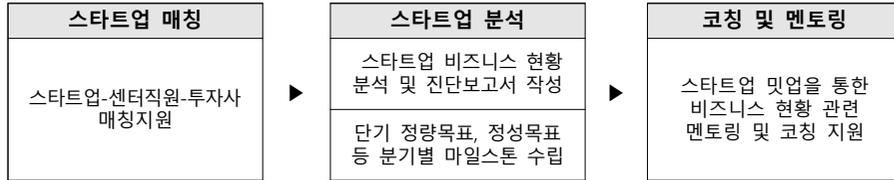
2

지원내용

◆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및 현황 분석하여 성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고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

- **스타트업 진단 프로그램** : 스타트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사업모델, 사업화 역량진단 등을 시행하여 기업진단 기반으로 목표설정 및 마일스톤 수립하여 스타트업-직원-투자사 협업하여 맞춤형코칭 및 멘토링 지원 제공

< 기업진단 프로그램 진행절차(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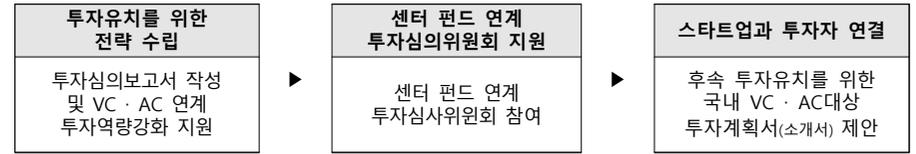
- **맞춤형 사업화자금 지원** : 기업당 8백만원 이내
 - 기업진단 기반으로 제품-기술-서비스 등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금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무형자산 취득비(경영)	창업아이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적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시제품 제작(기술)	자체 개발이 힘들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한 시제품 제작비(외주용역)
재료비(기술)	제품/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서비스 이용료(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연관된 서비스 이용료
제품개선비(판로)	제품/서비스와 관련 시장에 적합하게 디자인 및 포장지 개선비
마케팅 지원비(마케팅)	제품/서비스 및 기업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투자)	투자유치를 위한 디자인 및 IR 제작 비용
창업활동비	창업기업이 창업활동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50만원 이내)

- **투자유치 프로그램** : 센터 펀드 및 협업 AC·VC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전략 및 기업 IR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유치 프로그램 진행절차(안) >



- **데모데이 프로그램** : AC·VC 연계하여 네트워킹 기회제공 및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의 장 마련과 우수기업에 한하여 2023년 해외시장검증 기회 제공
- **기타 연계지원**
 - 투자역량강화 기반을 통한 협업투자사 및 AC·VC 연계 투자유치 지원
 - 스타트업 소개 및 제품·서비스 관련 언론 홍보 지원

3

신청·접수

- 모집규모** 총 6개사 내외
 - * 전체/분야별 모집규모(6개사)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22년 4월 13일(수) ~ '22년 5월 3일(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 (필수) 사업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투자계약서 등 기타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2일

- *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납부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및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평가 및 선정

□ 평가개요

- (평가절차) 사업화, 기술개발, 글로벌 협업, 투자유치에 대한 창업기업의 보유 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2단계(서류→발표)로 종합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를 발표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는 발표/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함(대표자 참석이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후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후 진행)

- 발표평가는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장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온라인 플랫폼은 주관기관에서 지정)
-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 선정 이후 신청(지원) 제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기업 평가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내용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최종선정	

· 제출된 신청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평가
· 서류평가 통과 스타트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 대상자별 선정 및 이메일, 유선 통지

- * (가점) ①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대상(1점)
- ② IBK창공 졸업기업 대상(1점)
- ③ 2021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대상(1점)
- ※ 가점은 총 3점으로 해당 부분 반영예정

○ (심사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요건 검토 ■ 평가항목 및 기준 <총 100점 만점>
서류/발표평가	문제인식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 창업아이템 목적 및 필요성
	실현가능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 모델의 다각한 분석을 통한 실현가능성 등의 사업화 전략 · 창업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등
	성장전략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단계별 자금 투입 등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구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00 이전에 접수 마감 요청
(※ 마감시간 17: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김영수 매니저 : 051-749-8936
- E - mail : mykim2732@ccei.kr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01호
-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0.8.)
<p>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p>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형주점업	56211
2	무도유형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